

의안번호	2205861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E4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 가공업자가 제조한 쌀가공품 중 쌀 함유량이 100분의 30이 상인 식품(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된 식품은 제외)의 공급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 함유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으로서 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쌀가공업자는 쌀가공업(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하고, 쌀가공품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뜻함(「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쌀가공업자 중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비중,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 함유량이 30% 이상

인 쌀가공식품으로서 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매출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통계조사)¹⁾에 따라 쌀가공식품 품목별 매출액 자료는 집계되고 있으나, 각 품목의 쌀 함유량별 매출액 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 현재 쌀가공품의 정의에 쌀 함유량 기준은 없고, 쌀가공품 내 쌀 함유량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음
 - 2022년 쌀가공식품 세부품목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표] 쌀가공식품 세부품목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매출액(십억원)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사업체 수	비중	매출액	비중	
쌀떡류	11,233	77.8	2,317	27.5	0.21
주류	701	4.9	1,486	17.6	2.12
곡물가공식품류	494	3.4	434	5.3	0.88
가공밥류	545	3.8	2,659	31.5	4.88
쌀과자류	453	3.1	164	1.9	0.36
쌀빵류	133	0.9	68	0.8	0.51
당류	125	0.9	62	0.7	0.50
면류	106	0.7	114	1.4	1.07
음료·다류	121	0.8	268	3.2	2.21
장류	304	2.1	659	7.8	2.17
조미식품류	105	0.7	34	0.4	0.33
쌀가루	121	0.8	154	1.8	1.28
첨가물류	13	0.1	9	0.1	0.71
합계	14,454	100.0	8,428	100	0.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24.1.)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